
공중보건위기에서 사회권력의 역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활동 경험

최홍조*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초록

감염과 인권의 긴장은 오랜 학계의 주제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한국에서도 이 논쟁은 반복되었다. 공중보건위기 시기 인권의 옹호자로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결성되고 활동했다. 이 글은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지배적인 방역 담론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권력으로 정의하고, 에릭 올린 라이트의 세 가지 변혁 모델에 따라 분석을 시도한다. 공중보건위기 시기 사회권력으로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활동을 정리하고, 단절적, 틈새적, 공생적 변혁 전략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단절적 변혁과 공생적 변혁 전략을 실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 전략을 구사했지만, 지배적인 담론의 변화에 두드러진 성과를 만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공중보건위기 시에 사회권력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했고,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관점의 토대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사회권력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조교수, 시민건강연구소, †교신저자 (hchoi.ku@gmail.com)

투고일: 2024.01.17./ 수정일: 2024.02.14./ 게재확정일: 2024.02.14.

I. 머리말

2023년 8월 31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누적감염자 수는 3,457만만 명이고 사망은 약 3.6만 명이다(질병관리청, 2024). 이 후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어, 전수감시에서 단계적 표본감시로 전환되었으니, 이 수치가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다. 중복 다회 감염 사례도 많겠지만, 코로나19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감염에 휘말린¹ 대규모의 집단 경험이었다. 이와 동시에 감염병과 인권의 긴장이라는 오래된 논의를 다시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는 계기도 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감염과 인권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어졌다. 초기 논의는 격리(isolation)와 검역(quarantine)을 둘러싼 논쟁과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박원규(2020)는 독일의 감염병 예방법과 국내 법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감염을 이유로 한 신체의 구속에서 ‘병원체 노출’의 객관적 증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하여, 코로나19 초기 개정한 한국의 감염병예방법은 접촉자에 준하는 상태를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그 객관적 증명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하였다(최홍조와 최은경, 2020; 전상현, 2020). 또한, 역학조사를 둘러싼 광범위한 개인 정보 수집의 과정과 수집한 정보의 보관과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다(장여경, 2021; 황성기, 2021). 특히 역학조사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감염 환자의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는데, 불필요한 정보의 과도한 공개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자유권 분야의 핵심

적 조치와도 같은 집회 시위의 권리도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유보되었다. 이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이재희(2021)는 ‘포괄적 기본권 제한’이 부적절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예외적 현상에 대한 인권 관점의 해석, 인권기반의 감염병 관리원칙,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논의도 일부 제기되었다. 이기춘(2021)은 소위 ‘행정명령’이라는 조치가 한국의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많은 “행정명령” 조치가 위헌적 이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방역 과정에서 공공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인권 제한 조치가 ‘인권의 상대주의적 접근’으로 본다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김준혁, 2021).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인권을 협소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시민의 보호 의무와 충족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통합적 인권의 이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서채완, 2021).

감염과 인권의 대립적 논쟁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다. HIV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 침해를 당연시한 것이 그 사례다. 유엔 에이즈 계획(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초기 국가 권력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UNAIDS, 2020). 서보경(2023)은 한국의 HIV 질병 정책 역사에서 단 한 명의 감염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접근을 ‘토벌’의 과정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토벌’의 과정이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감염 확산의 예방에 기여했다는 근거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감염병 유행 과정에서 인권은 손쉽게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개념으

1 ‘감염되다’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서보경(2023)의 견해를 따라 ‘휘말린’으로 표현한다. 서보경은 이 책에서, 기존에 감염을 다루는 표현의 방식이 감염 ‘되는 것’ 혹은 ‘당하는 일’이라 지적하며, 감염을 바이러스와 개인의 관계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실제 감염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공동체적 몸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과 바이러스의 ‘연결성’에 주목한다면, 감염을 수동이나 능동의 의미가 아닌, 중동태의 형태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도 이와 유사하게 인식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단순히 바이러스와 개인들의 관계라거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소위 각자도생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맥락과 구조적 조건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사건이었다.

로 대우받았다. 인권활동가 사이에서도 감염과 인권의 불편한 관계 경험은 축적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강제 격리 정책으로 집단 이주 부락을 형성하고, 강제적 단종과 낙태, 집단학살을 경험한 한센인들의 현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이정은, 2013). 결핵 환자의 입원명령 제도에서(진석이, 2016), 메르스 당시 격리 조치에 대한 경험(황필규, 2018)에서 각인한 경험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결성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메르스 초기 강제 격리 대상 범위에 대한 법적 모호성, 격리자에 대한 권리보장 - 치료받을 권리, 격리기간에 대한 통지 절차, 이의제기 권리 등 - 과 절차적 요건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았다(황필규, 2018). 하지만, 코로나19 초기 관련법률의 개정과정에서는 인권 측면의 문제제기는 고려되지 않은채,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만 강조되었다.

이 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코인넷)’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많은 평가 연구에서 그 주된 대상은 국가 권력이었다. 또한 많은 학술 연구는 감염병 위기 시기 일반 시민들의 행태와 수용성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감염병 대유행 과정에서 사회권력이 무엇을 했는지는 학술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인권연대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포착하지 못한 공백을 채우는 의미가 있다. 다만, 단순한 활동의 소개는 일반적인 논문에서의 해석과 설명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코인넷의 활동을 지배적인 주류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에릭 올린 라이트(2012)의 저서 『리얼유토피아』에서 제시한 ‘변혁의 세 가지 모델’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이 글을 작성하는 주체가 스스로의 활동을 일정한 개념적 틀에 맞추어 질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혹은 집단문화기술지(collaborative autoethnography)라 할 수 있지만, 특정

방법론에 따르기 보다는 다소 자유로운 방식의 분석을 택한다. 이 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한다. 우선, 라이트의 세 가지 변혁 전략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코인넷의 활동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변혁 전략의 관점에서 코인넷 활동을 분석한다.

II. 사회권력과 변혁의 전략

최근 국내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자원동원론과 정치적 기회구조론 등이 자주 활용되었다(박진영, 2022). 사회운동이론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외부의 자원과 연계될 때 사회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서영표, 2013). 관련 국내 연구로는 사립 유치원의 예산결정과정을 자원동원론의 틀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한 김정인(2019)의 연구와 태극기 집회의 확대의 합리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최재훈(2022) 등이 있다. 정치적 기회구조를 포함하는 정치과정이론은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기존 운동사회에 내재한 힘이 사회경제적 과정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사회운동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한다(서영표, 2013). 국내 관련 연구는 가슴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과정을 다룬 박진영(2022)의 연구와, 청년당사자 운동의 궤적을 추적하며, 정책거버넌스에 우호적인 기회구조의 영향을 설명하는 김선기 등(2018)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운동의 주체 외부의 자원 혹은 구조를 사회운동 발전의 동력으로 다루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행위자 - 국가권력과 사회권력 등 - 의 관계를 중심으로 운동의 전략이 실천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 틀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운동이론은 발전한 사회운동의 기전을 탐구하기 위한 틀로서 다루어졌다. 이에 반해 코인넷의 활동을 앞

선 사례들처럼, 일정 수준으로 발전하여 완성한 사회 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코인넷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틀로서 에릭 올린 라이트의 세 가지 변혁 전략을 활용할 것이다. 라이트는 사회계급의 체계적 틀을 제시한 학자로 국내에 알려졌다(조은, 강정구, 신광영, 1992). 보건 분야 연구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사회계급의 측정을 위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탐구의 대상이었다(윤태호, 2000). 이후, 변혁의 과정과 이를 이끌어 내는 힘으로서 ‘권력’에 주목하고, 권력의 영역을 국가, 경제(시장), 사회 권력으로 구분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구조의 유형을 제시했다(라이트, 2012). 국내 연구에서는 라이트가 제시한 사회권력 강화의 경로 중 하나인 ‘권력강화 참여 거버넌스(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의 사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김태수, 2007; 김새롭과 김창엽, 2018). 하지만, 라이트가 리얼 유토피아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변혁의 전략에 대한 학술적 탐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라이트(2012)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주목하며, 체제 변혁의 경로에 대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는 “단절적(ruptural)”, “틈새적(interstitial)”, “공생적(symbiotic)” 변혁(transformation)으로 구분한다. 단절적 변혁은 기존의 체제와 국가를 해체하고, 사회권력의 힘으로 새로운 체제와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를 직접적인 해체의 대상으로 상정한다. 단절적 변혁은 체제 변혁을 지향하는 혁명가들의 논리에 부합한다. 이에 반해, 틈새적 전략과 공생적 전략은 현 체제를 우회하거나 지배계급과 전술적 협력을 시도한다. 틈새적 전략은 기존의 체제와 국가 외부에 있는 균열 혹은 틈새를 포착하고, 그 곳에서 새로운 대안을 실천하는 것으로 무정부주의적 전략과 유사하다. 공생적 전략은 경우에 따라 지배세력과 타협하고 국가를 활용하여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이다(<그림1> 참조).

라이트(2012)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전략은 순서대로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 무정부주의 전통, 사회민주주의 전통”과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세 가지 전통의 역사적 경험만으로 이 전략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라이트(2012)는 단절적 변혁의 실천은 한 사회의 ‘총체적 단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특수한 제도에 한정하여 기존의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로의 이행은 단절적 변혁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체적 단절’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를 지향하는 ‘사회권력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존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 틈새적 전략은 “자본주의가 ‘허용’하는 공간”에 한정된 운동이라는 비판이 있다. 즉, 틈새적 전략이 사회권력이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에 주목하기보다는 대안적 공간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2012)는 이러한 비판에 해명하기를, 틈새 전략을 ‘단절로 가는 경로 닦기’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며, 현 체제의 문제를 드러내고 새로운 경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략이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공생적 변혁이 지배계급과의 협력 혹은 타협을 시도하므로 개량적이며, 기존의 체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경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라이트(2012)는 이 ‘타협’의 발생 지점이 “노동계급의 ‘단결력’과 자본가의 ‘물질적 이익’”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동계급의 단결력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때, 자본가의 이익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조합이 작업장 안전을 강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관철시킨 결과가 생산력 향상과 자본의 이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바로 그 경로이다. 따라서, 공생적 경로는 일면 기존 체제의 강화에 복무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더 민주적이며 평등주의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권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코인넷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사회권력으로서의 코인넷 활동을 변혁의 전략 틀 안에서 분석하겠다.

<그림 1> 변혁의 세 가지 전략: 단절적, 틈새적, 공생적 전략

	단절적 변혁	틈새적 변혁	공생적 변혁
변혁 논리와 가장 밀접히 관련된 정치 전통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
변혁을 위한 핵심적인 집합행위자	정당으로 조직된 계급	사회운동	사회세력과 노동의 연합
국가에 관한 전략적 논리	국가 공격	국가 밖에서 대안 건설	국가의 이용: 국가 영역에서 투쟁
자본주의 계급에 관한 전략적 논리	부르주아지와 대결	부르주아지 무시	부르주아지와 협력
성공의 은유	전쟁(승리와 패배)	생태적 경쟁	진화적 적응

출처: 에릭 올린 라이트(2012)

III.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활동

1. 인권의 원칙 제시와 인권 거버넌스 구축 시도

코로나19 초기에는 우리 사회가 기존에 ‘인권’으로 이해하고 있던 많은 행위와 조치가 유보되거나 억제되었다. 감염 환자의 발견과 뒤따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은 검사를 (강제로) 받아야만 했고, 이동 경로가 밝혀져야 했으며, 일정한 기간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당할 수밖에 없었다. 직접적인 감염과 접촉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자유롭게 없었고, 모이지 못하였으며,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의 행동을 제약받았다. 이 같은 ‘개인적’인 ‘권리’의 강제적 유보 외에도 방역 정책은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에 비교적 적응이 쉬운 집단도 있었다. 반면,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조건과 학교 폐쇄로 인한 교육권 보장이 쉽지 않은 사람

들이 있었다(Lee and Kim, 2020;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 2021). 인권시민사회는 어느 행위와 조치까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유보할 수 있는 인권의 범위인지 혼란스러웠고, 관련 논의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초기 혼란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이 기획되었다. 2020년 4월 28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총 535개의 노동, 시민, 종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발족하였다. 시민대책위는 ‘해고 금지 및 고용유지’, ‘차별 없는 직접지원’, ‘취약 계층 추가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민주노총, 2020). 시민대책위는 국내 사회권력의 총 집결이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2020년 중반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다른 흐름으로, 2020년 10월 22일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공동으로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코로나19 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라는 이름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김명희 등, 2020). 이 기획은 2020년 3월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의 위험 불평등, 자유권의 위협, 보건의료와 돌봄 인프라 문제, 바람직한 재난거버넌스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위기 초기 시민의 관점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적 연구활동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또 다른 한 축으로 2020년 3월 인권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코인넷이 결성되었다. 코인넷은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재난의 시대’에 중요한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목표로했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3). 코인넷은 방역 정책에서 무시되지 않아야 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을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담아 발표했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위기 시에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인권 유예’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업과 언론’의 책무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인넷은 사회적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이를 관철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감시활동과 인권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언론 연속 기고활동을 통하여, 방역을 위한 모든 강제적 조치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 과제를 제출하였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발표와 이행 촉구 활동은 향후 코인넷의 실천 방향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코인넷은 감염병 대응에 도움 되지 않는 특정 “정책을 철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하지만,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전체 정책의 전환이나, 광범위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다른 한 축으로, 코인넷은 공중보건위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결성 초기 방역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특별대응팀은 3개월의 조사활동을 끝으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이후 코인넷은 정부와의 소통채널을 구축하지 못한 채 현안대응 활동을 이어갔다. 2021년 3월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 검사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의 항의가 이어졌고, 코인넷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면담 요청 했다. 문제의식을 느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주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이 있었지

만, 단발성 소통에 그쳤다. 2021년 4월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정부와의 소통에는 새로운 계기가 열렸다. 같은 해 6월 방역기획관실과 코인넷 활동가들의 간담회가 있었고, 이 후 중수본 내에 방역인권보호팀이 신설되었다. 신설 방역인권보호팀을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서와 코인넷 참여 단위들의 정례 회의가 2022년 4월까지 이어졌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코인넷은 이 과정을 인권 기반의 재난 거버넌스 구축 활동의 하나로 본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이 회의 공간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방역 정책으로 인한 취약집단의 차별, 중장기적 공중보건위기 인권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이 논의되었으나, 지역적 주제에 한정된 일부 개선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2. 사안별 대응 활동

코인넷은 여러 사회 세력과 연대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코로나19 대응활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 주요 영역으로는 의료공백, 코로나19 백신 분배, 정보인권, 애도와 기억의 권리, 평화적 집회의 권리, 행정조치와 범죄화 대응, 이주민과 장애인과 홈리스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의 옹호활동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 대응 활동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이 활동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코인넷은 존엄과 평등 및 인권을 재확인하고 인권을 주류화²하기 위해 활동했다. 청도대남병원 사태에서부터 코호트 격리의 문제는 제기되었다. 하지만,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비롯한 시설 중심의 방역 정

2 인권의 주류화는 방역 정책 결정과 변동 과정에서 인권이 우선시 되고, 담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방역 단계의 결정과 단계별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을 인권 관점으로 검토하고, 인권의 유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권 측면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책은 변화가 없었다. 시설 중심의 방역 정책은 장애인과 홈리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주거 지원과 돌봄 지원의 대책이 부족한 방역 정책으로 장애인과 홈리스의 안전한 격리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다(코로나19 인권 대응네트워크, 2020). 방역 정책이 집회를 제한하고 집회참여자를 구속하는 도구가 되었다. 제한된 집회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도 “인권적 개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의료 공백팀과 백신인권팀의 활동에서도 정부의 방역 대응 과정에 ‘인권의 원칙’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코인넷의 활동 경험을 통해,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권의 주류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하였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둘째, 코인넷의 활동은 사람 중심의 원칙과 민주적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과정이었다. 새로운 감염병의 대응은 많은 부분이 불확실한 영역이었다. 모르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은 피해에 더 크게 노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손쉽게 억압했다. 집회 시위로 인한 추가 전파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했다. 하지만, 통치의 일방성을 제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인 집회를 금지되었다. 이는 곧 사회권력의 발언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방역의 과정과 결과가 권력자원이 부족한 집단과의 소통과 참여 경로를 차단한 것이다. 코인넷의 활동은 이 경로 차단을 드러내고 방역이 사람 중심성과 민주적 참여를 더 강조해야함을 주장했다.

셋째, 코인넷의 활동은 감염병 예방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자격 보장 없이 미등록 이주민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어렵다. 홈리스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정책은 감염의 확산 예방과 적절한 격리 조치의 선제 조건이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정부의 동

선 공개 지침에도 반영되었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결론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과제가 도출되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이 각 영역에서 이어졌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코인넷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질병관리청의 정책용역과제에 참여하였고, 이 과제를 통해 제시한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와 감염관리계획의 수립 과정에 인권 보장의 강조와 감염관리위원회 등에 시민사회대표의 참여 보장 및 과도한 처벌과 행정조치의 제한 등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코인넷의 활동은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민간 병상 중심의 구조가 감염병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전체 병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자원들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에 적절하게 동원되지 못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병상에 비해, 공공병상의 높은 코로나19 입원율로 증명되었다(김동환 등, 2022). 또한, 코로나19 초기 의료공백의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병상이 코로나19에 동원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확인했다. 출입명부 시스템 등 방역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민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공적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부재도 코로나19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구조였다(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이상의 코인넷 활동은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한 축으로 인권거버넌스 안에서 문제 제기과 소통을 시도했고, 다른 축으로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토론회, 캠페인 등의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표 1>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사안별 대응 활동

세부 활동 주제	주요 내용	주요 활동
의료 공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필수 의료의 공백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활동	(1) 의료공백 인권실태 조사활동과 보고서 발표(2020년 11월 25일), (2)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캠페인(2021년 2월 22일~3월 18일)
백신 인권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준비되는 시기, 백신 우선접종순위와 배급 계획을 사람중심의 관점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	(1)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 집담회(2021년 1월 28일~3월 2일: 총 6회), (2)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 집담회 보고서 및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2021년 5월 7일)
정보 인권	소위 3T(test-trace-treat) 모델에 뒤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무원칙한 동선 공개 등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1) 전자팔찌, 전자출입명부, 동선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촉구 등 입장 표명 활동, (2) 진보네트워크와 정보인권연구소의 보고서 출판 활동, (3) 정보인권 보호관점의 대안 법안 입안 활동
애도와 기억의 권리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발생한 다양한 죽음을 둘러싸고, 애도하기 기억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현장에 대응하는 활동	(1) 코로나19 사망자 추모 관련 지침 개정 의견 제출(2021년 12월), (2) 애도와 기억의 장 - 온라인 추모공간 개설 및 추모 문화제 개최(2022년 4월 8일, 2022년 6월 19일)
평화적 집회의 권리	집회금지 행정조치에 대응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와 시위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	(1) 서울시 집회 금지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 면담, 인권침해구제신청 등, (2) 코로나19와 집회 시위의 권리 보고서 발간(2021년 8월 12일)
행정조치와 범죄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한 행정조치의 위법성을 알리고, 과도한 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 활동	(1)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개최(2021년 10월 20일), (2) 범죄화가 아닌 인권에 기반을 둔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안 도출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대유행 시기 발생하는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자 대상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활동 조직	(1) 이주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강제 검사 저지 활동, (2) 코호트 격리 문제점 제기 및 탈시설을 옹호하는 활동, (3) 취약집단의 재난지원금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 (4) 취약집단의 기본권 침해 현황 드러내고 개선 요구 활동, (5) 코로나19 위중증 피해자 실태 조사

출처: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3

IV. 변혁의 전략관점에서의 활동 평가

코인넷의 활동은 인권을 중심으로 사회권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중보건위기 대응 과정을 보다 더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발생 시, 익명 검사를 도입한다거나, 동선 공개 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전자 팔찌의 강제적 도입 방향을 전환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방역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다시 세우지는 못

했다. 물론, 인권과 방역의 조화 혹은 “인권기반방역”이라는 “인식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를 ‘보건의료운동³⁾’의 외곽에 생성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정성식 등, 2023). 특히 정성식 등(2023)은 “‘요구하는’ 공간에 머물던 시민들이 국가가 ‘초대할’ 공간에 참여하는 ‘숙의적’ 기회가 생겼지만,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변화하는데 실패 했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권력 구조에 함몰”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중수본 방역 인권보호팀과 코인넷의 인권거버넌스 구축 활동에 대한 해석이다. 이 자체로 의미 있는 평가다.

3 여기서 보건의료운동은 김종영과 김희윤(2013)이 설명하는 ‘보건운동’- 의료접근운동, 특정집단보건운동, 체화된 보건운동 - 에 가까운 설명이다. 인

다른 한편으로 코인넷의 거버넌스 접근은 라이트가 제시한 공생적 변혁 전략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라이트(2012)는 “계급타협”을 중심으로 공생적 변혁을 설명하고, 주요 행위자로서 노동자 계급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권력 강화의 방향이 엘리트와 지배계급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을 “계급타협”의 형태로 설명한다. 즉, 주요 행위자로서의 노동자 계급은 ‘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는 생태주의적 탈성장 운동에서 의회와 정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활동을 공생적 전략으로 설명하는 맥락과 일치한다(D’Alisa and Kallis, 2020). 코인넷의 인권거버넌스 구축 활동은 방역 대응 조직 구조 안에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을 생성하고, 방역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입시키려는 활동이 한 축이었다. 다른 축은 정부의 관련 위원회에 취약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을 참여시키거나 별도의 위원회 - 감염 취약계층 전문위원회 - 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최홍조 등, 2022).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의 활동은 성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인권거버넌스 구축 활동은 “계급타협”을 염두에 둔 공생적 접근에 유사했으나, 최종적으로 “계급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인권을 고려한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지배계급의 이익 - 반대를 손쉽게 무마하고, 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이익 -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권력과 사회권력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못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권거버넌스의 공간을 만들어 보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들 - 감염병과 집회의 권리, 애도와 기억의 권리, 취약집단 차별금지의 원칙, 주거 등 사회보호의 권리,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와 공중보건의 관련성 - 은 사회권력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감염병 대응 정책은 흔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여겨진다. 이 영역에서 코인넷의 활동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망설임 - 모든 종류의 인권이 유보되는 것이 과연 피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감염병 정책인가? - 을 해소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초기,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권활동가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정부의 강제적 조치를 비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있었다. 하지만, 코인넷이라는 집합적 틀은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학습하며, 덜 인권 침해적이거나, 인권 유보 없이도 방역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존엄과 평등의 가치가 감염 정책에도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동은 ‘국가’ 기구를 ‘이용’하여, 사회권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틈새 전략의 공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식별하며, 단절적 변혁으로 나아가는 ‘누적적 효과’의 기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코인넷의 결성과 첫 활동은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제출이었다. 서보경(2023)은 HIV감염을 둘러싼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설명하면서, ‘균을 가진 사람을 잡아내는 것을 최우선’(서보경, 2023)으로 하는 전통이 HIV 정책으로 이어짐을 지적했다. 이 지적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소위 3T 전략은 감염인을 모두 진단하고, 감염을 완전하게 종식 시키겠다는 목표⁴ 하에 추진되었고, 인권 측면의 고려는 부족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초기 방역 정책을 향해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는 활동이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아야 한

권운동이 ‘건강’을 주제로 한 운동에 ‘연대’해 왔으나, 코인넷의 활동처럼 ‘주도적으로’ ‘건강’주제의 운동에 참여한 사례로서 ‘보건의료운동’ 외곽이라고 표현했다.

4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다는 주장은 새로운 방역 정책의 제시라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방역 정책 질서의 종식을 의미하며,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방역 정책을 재구성하는 ‘단절적 변혁’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서론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라고 규정하면서, 코로나19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명하였다(코로나19 인권 네트워크, 2020). 따라서,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이들의 의무 이행을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시민의 권리를 재정리하며 사회권력의 결집을 촉구했다.

한편,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와 이에 뒤따르는 코인넷의 활동을 단절적 변혁 전략의 일부로서 설명하는 것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라이트(2012)는 ‘리얼 유토피아’에서 단절적 변혁의 주요한 특징을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라이트(2012)는 변혁 이후의 경로에 대한 예상과 이에 뒤따르는 비판에 대한 토론에 집중했다. 또한, 라이트(2012)는 단절적 변혁의 주체가 노동계급의 정당이고,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전면적 대결을 주요 특성이라 설명한다. 하지만, 코인넷은 진보정당을 포함한 계급 정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비록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새로운 체제를 제시하지만, 대결을 위한 실질적 동력은 없었고, 동력의 조직화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코인넷의 참여 조직은 코로나19의 기간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진보정당과 노동단체를 비롯한 여타의 사회조직으로 그 힘이 확장되지 않았다.⁵ 따라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의 코인넷 활동이 ‘단절적 변혁’의 경로와 상이한 측면도 있다. 하

지만, 총체적 혹은 부분적 단절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시도와 방향성 제시 자체가 ‘단절적 변혁’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다(D’Alisa and Kallis, 2020).⁶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체제와의 단절을 분명히 선언했다는 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변혁 전략이라는 틀에서 코인넷의 활동은 일부 비어있는 지점이 있다. 첫째로, 코인넷의 활동은 주로 국가권력과의 대결에 집중한 반면, 경제권력을 대상으로 한 활동⁷은 부족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에서 기업과 언론의 의무를 제시했지만, 이후 실천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둘째로, 틈새 변혁 전략에 해당하는 시도는 부족했다. 즉, 현 체제를 우회하거나 무시하며 틈새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구축하는 활동이 적었다. 라이트(2012)의 설명에서 코인넷과 같은 사회운동 세력은 틈새 전략의 주요 행위자로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틈새 전략의 구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어쩌면, 주요 행위자의 특성만으로 운동의 주된 전략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사회적 재난의 특수성이 틈새 변혁 전략 구사의 어려움이었을 수 있다. 재난에 대항하는 운동 전략은 국가를 우회하기 보다는 국가를 직접 공격하거나 ‘이용’하는 전략의 선택이 필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넷의 활동에 대한 이 같은 분석은 몇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라이트(2012)가 ‘리얼 유토피아’에서 밝히는 것처럼, 세 가지 변혁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이론적 공백은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코인넷의 활동은 또다시 분석의 자료가 될 수 있

5 운동이 확장되지 못한 한계는 추가적 연구를 통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6 이 연구에서 프랑스 연구(Rackham, 2012)에서의 주장을 단절적 변혁의 사례로 소개한다.

7 쿠팡 노동자의 집단감염과 관련한 활동에 연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규명하려 노력했다.

우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코인넷 활동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어려웠다. 코인넷 활동에 대한 외부 시선의 평가 사례가 드물었다. 앞서 언급한 정성식 등(2023)이 코인넷의 활동이 현 체재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반면, 허현희 등(2021)은 코인넷의 활동을 ‘적대적 대항력을 가진 협력적 거버넌스’로 개념화한 바가 있다. 다만, 허현희 등(2021)의 분석에서도 코인넷은 변혁의 전략을 구사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미완의 기획임을 지적하고 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코인넷의 활동을 토대로 공중보건 위기 시 한국의 사회권력이 어떠한 변혁 전략으로 활동했는지 분석했다. 이 과정을 통해, 코인넷이 단절적 변혁과 공생적 변혁 전략을 주로 구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틀에서, 코인넷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우선, 코인넷의 활동은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장기적 운동의 기획이라기 보다는 단기적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하나의 사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실천의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은 기존의 운동 관점과 경험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개별 활동들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새로운 공중보건위기에서 사회권력의 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둘러싼 사회권력의 활동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국내 건강 분야의 많은 학술적 논의는 권력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에서 사회권력은 무엇을 했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지식의 공백을 채우는 과정일 수 있다.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에서 ‘하나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한다. 사회운동이 크고 작은 성과를 축적하고, 이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권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경로의 전략은 더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
해당 없음

이해상충선언
이 논문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

사사표기
이 글은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소속단체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 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며, 이 논문의 토대가 되는 보고서 집필진은 고기복(용인이주노동자실험),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김필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할라(다산인권센터),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서영(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안형진(홍리스행동), 여쓰(인권운동사랑방),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임.

참고문헌

- 김동환, 유태경, 이운예, 안미라, 안성은, 백상주, 2022,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입원의료이용 변화”, 『HIRA Research』, 2(2), 183-201
- 김명희, 김성이, 김정우, 김세라, 김영선, 김정옥 등, 2020,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코로나19 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 연구보고서, 서울: 시민건강연구소.
- 김새롬, 김창엽, 2018, “건강 영역에서 권력강화적 참여의 개념과 전략”, 『비판사회정책』, (59), 33-67.
- 김선기, 옥미애, 임동현, 2018,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정책거버넌스 현상 읽기: 청년당사자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0, 7-43.
- 김정인, 2019, “사립유치원 집단자원이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원동원이론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3), 3-35.
- 김중영, 김희운, 2013, “‘삼성백혈병’의 지식정치: 노동보건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 『한국사회학』, 47(2), 267-318.
- 김준혁, 2021, “방역과 인권: 보편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 『생명, 윤리와 정책』, 5(1), 49-75.
-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 2021, “코로나19와 불평등 -코로나19가 아동의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70, 167-195.
- 김태수, 2007,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의 모색 - 라이트의 EPG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8(3), 161-180.
- 민주노총, 2020, 코로나19-사회경제적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4년 1월 14일 검색. <https://nodong.org/statement/7681842>
- 박원규, 2020,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 코로나19 관련 독박진영, 2022, “환경보건재난에서 정치적 기회의 변화, 그 이후: 가슴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6(2), 7-38.
- 서보경, 2023, 『휘말린 날들』, 서울: 반비.
- 서영표, 2013, “사회운동이론 다시 생각하기: 유물론적 분석과 지식구성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13(2), 303-346.
- 서채완,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공익과 인권』, 21(0), 249-280.
- 에릭 올린 라이트, 2010(2012), 『리얼 유토피아』, 권화현 역, 파주: 들녘.
- 윤태호, 2000, “우리나라의 사회계층간 건강행태 차이”,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기춘, 2021, “코로나19 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국가법연구』, 17(1), 1-25.
- 이재희, 2021, “집합금지명령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7, 95-122.
- 이정은, 2013, “근대도시의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와 인권의 사회사”, 『도시연구』, 10, 137-164.
- 전상현, 2020,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공법연구』, 49(2), 341-370.
- 정성식, 권시정, 김보경, 김선, 김성이, 김새롬 등, 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의 공중보건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서울: 시민건강연구소
- 조은, 강정구, 신광영, 1992,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한국사회학』, 25, 27-51.
- 진석이, 2016, 『한국의 결핵정책, 그 방향을 묻는다!』, 이슈페이퍼, 서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질병관리청, 2024, 2024년 1월 9일 검색, 코2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https://ncov.kdca.go.kr/bdBoardList_Real.do
- 최홍조, 최은경, 2020, 『코로나3법, 건강권의 확대인가 자유권의 억압인가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서울: 시민건강연구소.
- 최홍조 등, 2022, 『인권 관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청주: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3,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연구보고서.
- 허현희, 이도연, 강의영, 2021, “코로나 19 백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분석 사례 연구: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대응을 중심으로”, 『NGO 연구』, 16(3), 179-218.
- 황성기, 2021,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총』, 38(1), 1-34.
- 황필규, 2018, “심포지엄 특집 [발표3] 감염병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격리의 실제적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78), 112-134.
- D’Alisa, & Kallis, 2020, "Degrowth and the State", *Ecological Economics*, 169, 106486.
- Lee, J. & M. Kim, 2020, “Estimation of the number of working population at high-risk of COVID-19 infection in Korea”, *Epidemiology Health*, 42(0), e2020051-2020050.
- Rackham, J., 2012, “Pour une décroissance libertaire”, *Entropia*, 13, 140-149.
- UNAIDS, 2024, 2024년 1월 9일 검색, “States responses to Covid 19 threat should not halt freedoms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UN expert on the rights to freedoms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r. Clément Voule, <https://bully.kr/BTMcr3M>

Role of Social Power during Public Health Crisis

: Experiences of Korean COVID-19 Human Rights Network

Hongjo Choi †*, Korean COVID-19 Human Rights Network**

Abstract

The tension between infectious disease policy and human rights has long been a topic in academi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this debate resurfaced. The COVID-19 Human Rights Network was formed as advocates for human rights during public health crises. In this article, the network defines itself as a social power seeking changes in the dominant discourse of infection control. It attempts to analyze the network's activities using Eric Olin Wright's three transformative models. Summarizing the network's actions as a social power during the public health crisis, the article examin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disruptive, interstitial, and symbiotic transformative strategie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VID-19 Human Rights Network has implemented both disruptive and symbiotic transformative strategies. While employing various practical strategies on the ground, it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dominant discourse. However, the network self-validated the presence of social power during the public health crisis in South Korea.

Keywords: COVID-19, Human rights, Infectious disease, Public health crisis, Social power

*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People's Health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hchoi.ku@gmail.com)